
공갈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2013. 12. 27.

전문위원 함석헌

I. 공갈범죄의 특징

1. 개념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 공갈은 재물 취득을 위해 폭행·협박을 이용해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2. 보호법익

- 재산 보호 - 재산범죄로서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규정
- 의사결정 및 행동의 자유 보호 - 공갈이 재물 취득의 수단

3. 다른 범죄와의 비교

- 사기 유사 →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점
 - 형법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공갈 죄를 사기, 횡령·배임과 함께 규정
- 폭력범죄 유사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폭행죄, 협박죄, 상해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은 상해 등 다른 폭력범죄와 함께 공동·상습·누범·특수범죄를 가중처벌
- 강도 유사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점
 - 강도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감경요소 중 “경미한 폭행·협박”을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라고 정의

II. 양형기준 설정 범위

1. 공갈범죄의 구성요건 및 법정형

법률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형법	§ 350①,②	공갈	10년 ↓
	§ 351	상습공갈	1/2 가중
폭처법	§ 2②	공동공갈	1/2 가중
	§ 2①3호	상습공갈	3년 ↑
	§ 2③	누범공갈 ¹⁾	3년 ↑
	§ 3①	특수공갈 ²⁾	3년 ↑
	§ 3③3호	상습특수공갈	5년 ↑
	§ 3④	누범특수공갈 ³⁾	5년 ↑
특경법	§ 3①2호	이득액 5억원~50억원	3년 ↑
	§ 3①1호	이득액 50억원 ↑	무기, 5년 ↑

2. 양형기준 설정범위

- 공갈범죄는 국민적 관심, 범죄발생빈도, 징역형 선고비율 등에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 의문이 없음
- 공갈(형법 제350조), 상습공갈(형법 제351조, 다만 형법 제350조의 상습범에 한함), 공동공갈(폭처법 제2조 제2항), 상습공갈(폭처법 제2조 제1항 제3호), 누범공갈(폭처법 제2조 제3항), 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1항), 상습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3항 제3호), 누범특수공갈(폭처법 제3조 제4항), 특경법상 공갈(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적용(미수범죄는 제외)

1)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2)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3)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III. 범죄유형 분류를 위한 특성 분석

1. 유형분류의 기준

가. 일반 원칙

- 유사한 속성을 가지거나 유사한 형사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 범죄들을 하나의 유형 내에 포섭
- 개별범죄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해당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범죄유형을 단순화
- 공통 양형인자 추출이 가능하도록 유형화

나. 공갈범죄의 속성

- 재산권의 침해 정도(피해액)나 의사결정의 침해 정도(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공갈범죄의 중요 양형인자
- 재산범죄와 자유침해범죄의 이중적 범죄 속성으로 인해 특경법과 폭처법이 동시에 규율하는 유일한 범죄
- 이중적 속성을 고려한 적절한 유형 분류를 위해서는 형법상 재산범죄 및 폭처법, 특경법의 특별가중 구성요건의 유형분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 공갈범죄 통계분석⁴⁾

가. 공갈사건 발생분포

	공갈	공동공갈	상습공갈	특수공갈	특경법 공갈	전체
사건수	87건	226	52건	45건	22건	432건
비율	20.1%	52.4%	12%	10.4%	5.1%	100%

▶ 전체 공갈범죄의 72.4%는 기본범인 형법상 공갈의 범주에 포섭(공동공갈 포함)

4)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작성의 공갈범죄 통계분석 자료(2006.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징역형이 선고된 공갈죄의 단일범 및 동종경합범의 1심 사건으로 총 432건) 중 유형분류 방안과 관련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정리함

▶ 상습공갈·특수공갈의 사건 수가 일반공갈의 사건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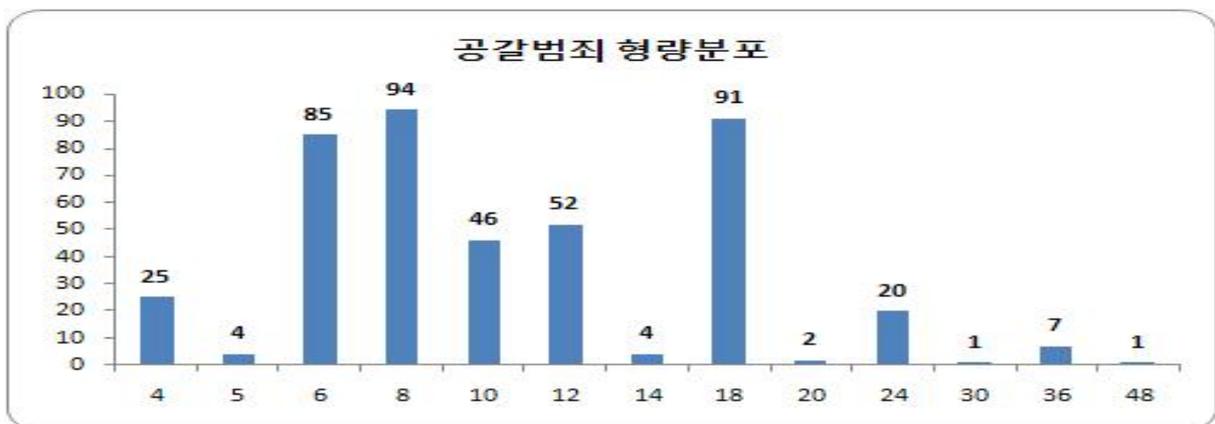
나. 이득액수별 분포

	1000만 ↓	2000만 ↓	3000만 ↓	5000만 ↓	1억 ↓	5억 ↓	50억 ↓	50억 ↑	전체
사건수	249	48	12	25	24	19	22	·	399
비율	62.4%	12%	3%	6.2%	6%	4.7%	5.5%	·	100%

▶ 전체 공갈범죄에서 이득액 1,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62.4%, 이득액 1억원 미만의 사건이 89.6%,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사건이 94.3%를 차지하고, 특경법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사건은 5.5%에 불과함

다. 형량분포

세부죄명		형량(월)												전체	
		4	5	6	8	10	12	14	18	20	24	30	36		48
공갈	수	10	0	22	22	11	14	3	5	0	0	0	0	0	87
	비율	11.5	0.0	25.3	25.3	12.6	16.1	3.4	5.7	0.0	0.0	0.0	0.0	0.0	1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공갈)	수	0	0	0	0	0	0	0	14	0	4	0	4	0	22
	비율	0.0	0.0	0.0	0.0	0.0	0.0	0.0	63.6	0.0	18.2	0.0	18.2	0.0	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수	15	4	63	72	29	32	1	9	0	1	0	0	0	226
	비율	6.6	1.8	27.9	31.9	12.8	14.2	0.4	4.0	0.0	0.4	0.0	0.0	0.0	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공갈)	수	0	0	0	0	1	1	0	36	1	9	0	3	1	52
	비율	0.0	0.0	0.0	0.0	1.9	1.9	0.0	69.2	1.9	17.3	0.0	5.8	1.9	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흥기등공갈)	수	0	0	0	0	5	5	0	27	1	6	1	0	0	45
	비율	0.0	0.0	0.0	0.0	11.1	11.1	0.0	60.0	2.2	13.3	2.2	0.0	0.0	100
전체	수	25	4	85	94	46	52	4	91	2	20	1	7	1	432
	비율	5.8	0.9	19.7	21.8	10.6	12.0	0.9	21.1	0.5	4.6	0.2	1.6	0.2	100



라. 이득액수별 형량분포 및 평균형량

공갈금액		형량(월)													전체	평균 형량
		4	5	6	8	10	12	14	18	20	24	30	36	48		
1천만 원 이하	수	23	3	64	51	24	23	1	47	1	10	0	2	0	249	10.470
	비율	9.2	1.2	25.7	20.5	9.6	9.2	0.4	18.9	0.4	4.0	0.0	0.8	0.0	100.0	
2천만 원 이하	수	1	0	8	16	6	6	1	10	0	0	0	0	0	48	10.542
	비율	2.1	0.0	16.7	33.3	12.5	12.5	2.1	20.8	0.0	0.0	0.0	0.0	0.0	100.0	
3천만 원 이하	수	0	0	2	4	1	2	1	2	0	0	0	0	0	12	10.667
	비율	0.0	0.0	16.7	33.3	8.3	16.7	8.3	16.7	0.0	0.0	0.0	0.0	0.0	100.0	
5천만 원 이하	수	0	1	2	8	4	4	0	4	0	2	0	0	0	25	11.560
	비율	0.0	4.0	8.0	32.0	16.0	16.0	0.0	16.0	0.0	8.0	0.0	0.0	0.0	100.0	
1억 원 이하	수	0	0	2	10	4	3	0	3	0	1	0	0	1	24	12.250
	비율	0.0	0.0	8.3	41.7	16.7	12.5	0.0	12.5	0.0	4.2	0.0	0.0	4.2	100.0	
5억 원 이하	수	0	0	1	1	0	6	1	5	1	2	1	1	0	19	17.053
	비율	0.0	0.0	5.3	5.3	0.0	31.6	5.3	26.3	5.3	10.5	5.3	5.3	0.0	100.0	
50억 원 이하	수	0	0	0	0	0	0	0	14	0	4	0	4	0	22	22.364
	비율	0.0	0.0	0.0	0.0	0.0	0.0	0.0	63.6	0.0	18.2	0.0	18.2	0.0	100.0	
전체	수	24	4	79	90	39	44	4	85	2	19	1	7	1	399	11.629
	비율	6.0	1.0	19.8	22.6	9.8	11.0	1.0	21.3	0.5	4.8	0.3	1.8	0.3	100.0	

- ▶ 이득액과 형량이 비례관계에 있음이 나타남
- ▶ 이득액 5,000만 원 이하 사건에서는 의미 있는 형량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 이득액 1,000만원 이하의 사건과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약 2개월 정도의 형량차이가 나타남
- ▶ 이득액 5억원 이하의 사건과 1억원 이하의 사건은 약 5개월 정도 차이가 형량차이가 나타남
다만 5억원 이하의 사건에는 폭처법 또는 특경법의 공갈사건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임

3. 유사범죄의 유형분류 사례

가.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사기⁵⁾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원 미만	- 1년	6월-1년6월	1년-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2년6월	1년-4년	2년6월-6년
3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4년	3년-6년	4년-7년
4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6년	5년-8년	6년-9년
5	300억 원 이상	5년-9년	6년-10년	8년-13년

02 조직적 사기⁶⁾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2년6월	1년6월-3년	2년6월-4년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4년-7년
3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5년	4년-7년	6년-9년
4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7년	6년-9년	8년-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10년	8년-13년	11년 이상

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0월	4월-1년4월	10월-2년6월
2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6월-2년	1년-3년	2년-5년
3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3년	2년-5년	3년-6년
4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2년6월-5년	4년-7년	5년-8년
5	300억 원 이상	4년-7년	5년-8년	7년-11년

다. 강도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 기준

5)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
 6)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1년6월-3년	2년-4년	3년-6년
2	특수강도 ⁷⁾	2년6월-4년	3년-6년	5년-8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도	2년-4년	3년-7년	5년-8년
2	특수강도	3년-6년	4년-7년	6년-10년

0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강도	6년-11년	9년-13년	11년 이상, 무기

04 상습·누범강도⁸⁾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상습·누범강도	5년-8년	6년-10년	8년-12년

라. 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	-----	----	----	----

7) 야간 주거 등 침입강도 및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를 말한다.

8) 형법 제341조, 특가법 제5조의4 제3항,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특가법 제5조의5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폭행치상	2월-1년6월	4월-2년	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년6월-3년	2년-4년	3년-5년
4	운전자폭행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5	운전자폭행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6	상습·누범·특수폭행	4월-1년2월	6월-1년10월	8월-2년4월
7	보복목적 폭행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4. 협박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협박	8월 이하	2월-1년	4월-1년6월
2	운전자 협박치상	10월-2년	1년6월-3년	2년-4년
3	운전자 협박치사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상습·누범·특수협박	4월-1년	6월-1년6월	8월-2년
5	보복목적 협박	4월-1년4월	10월-2년	1년-2년6월

IV. 구체적 유형분류 방안

1. 방안의 제시 및 검토

가. 이득액 기준 분류 방안

▣ 유형분류표(예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2	1,0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5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6	50억 원 이상			

2) 내용

- 공갈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
- 폭처법상 공동, 상습, 누범, 특수 유형은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

3) 검토

■ 긍정 견해

- 공갈죄는 폭행,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지만, 그 본질은 재산권 보호이므로, 결과불법의 측면에서 이득액을 가장 중요한 양형인자로 보아야 함
- 범죄의 속성이 유사한 사기죄나 특경법상 특정재산범죄인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에서 이미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분류한 바 있어 통일을 기할 필요
- 다만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등의 가중유형은 발생빈도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별도 유형으로 일반 공갈과 분리할 필요가 있음

■ 부정 견해

- 공갈죄는 사기·횡령·배임과는 달리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에 유사한 폭력 범죄의 하나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므로, 반드시 사기·횡령·배임범죄 등 재산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는 없음
- 판결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득액의 다과에 따른 형량범위가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이득액이 적다고 해도 폭행·협박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기도 함
- 특경법상 구성요건인 5억 원 또는 50억 원 외에는 기준이 되는 이득액을 정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은 법정형이 3년 이상,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인 범죄인데, 이들 범죄는 이득액의 다과보다는 수단의 반복성, 포악성이 문제되어 이들 범죄를 포섭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4) 이득액 분류 기준 제시 및 검토

■ 이득액 기준 분류안

- 1안: 1억원, 5억원, 50억원, 300억원의 5단계
- 2안: 1억원, 5억원, 50억원의 4단계
- 3안: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5억원, 50억원의 7단계

- 4안: 1,000만원, 1억원, 5억원, 50억원의 5단계
- 5안: 3,000만원, 1억원, 5억원, 50억원의 5단계
- 6안: 1,000만원, 5,000만원, 1억원, 5억원, 50억원의 6단계
- 7안 : 1,000만원, 3,000만원, 1억원, 5억원, 50억원의 6단계

■ 1,000만원 방안과 3,000만원 방안 비교(제4안과 제5안)

- 공갈범죄의 통계분석 결과에 의할 때, 1억원 미만에서 권고형량범위를 한번 설정한다면, 1,000만원과 3,000만원 사이에 형량범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3,000만원과 5,000만원에서는 형량 차이가 있어 3,000만원을 설정함이 타당
- 하지만 공갈범죄에서 저액의 이득액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서민 대상 범죄가 많아 3,000만원은 일반인의 인식 수준에 비추어 높은 기준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음

■ 검토 - 제5안

- 5억원 및 50억원 ▶ 특경법상 가중적 구성요건의 기준이므로, 이 구간은 소유형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 1억원 ▶ 판결분석결과, 1억원 이하의 사건과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사건에서는 약 5개월의 형량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사기·횡령·배임범죄에서도 이미 1억원을 기준으로 유형분류한 선례가 있으므로, 1억원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함이 타당함
- 3,000만원 ▶ 사기·횡령·배임범죄에서 1억원 미만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양형통계상 1억원 미만의 공갈사건에서 이득액에 따른 형량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득액이 적은 사건이 대부분 약식기소되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사기·횡령·배임죄와는 달리 공갈죄는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폭행·협박의 정도

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하고, 통계상 이득액 1,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62.4%,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77.4%에 달하여 1억원 미만에서 권고형량범위를 한번 설정해줄 필요가 있음 ▶ 1,000만원과 3,000만원 중에는, 양형통계상 1,000만원과 3,000만원 사이에는 형량범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3,000만원과 5,000만원에서는 형량범위에 차이가 있어 3,000만원을 설정함이 타당

- 300억원 ▶ 공갈죄는 사기·횡령·배임범죄와는 달리 이득액이 300억원이 넘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상정하기도 어려우므로,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은 낮음
- 5,000만원 ▶ 특가법에서 수뢰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뇌물범죄와는 달리 공갈죄는 이들 금액을 유형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법률적 근거가 없고, 양형통계상으로도 이득액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공갈사건에서 별도의 유형을 두어야 할 만큼 의미 있는 형량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음

나.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의한 분류 방안

■ 유형분류표(예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공갈			
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3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 내용

- 폭처법의 가중적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공동공갈은 1유형에 포섭)
- 다만 특경법상 가중구성요건을 형량범위에 반영하기 위하여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하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치를 두어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가중하는 등의 방식으로 형량범위를 조정

3) 검토

■ 긍정 견해

- 공갈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폭력범죄와 유사하므로, 재산 범죄보다는 폭력범죄에 기준을 맞춤
- 실무상 사기·횡령·배임과는 달리 공갈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2008. 1. 1.부터 2012. 1. 1.까지 4년간 특경법이 적용된 공갈사건은 28건, 전체 공갈사건의 0.8%에 불과함), 특경법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하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도 낮음
- 공갈죄는 범행의 결과인 이득액보다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폭행, 협박의 정도 등 행위불법이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부정 견해

- 공갈과 사기를 같은 장에 규정한 형법의 체계나 공갈죄의 보호법익,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공갈죄는 기본적으로 재산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속성이 유형분류에 반영되어야 함
- 제1유형의 공갈범죄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의 높은 법정형(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을 고려할 때 특별가중요소의 배치나 하한·상한의 가중만으로 적절한 형량범위를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전체 공갈범죄의 72.4%를 차지하는 일반·공동공갈을 이득액에 따른 구분 없이 하나의 유형에 모두 포섭하는 것은 양형기준의 실효성을 떨어뜨림
- 판결 분석 결과,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일반 공갈사건에서도 범죄로 취한 이득이나 피해의 정도가 양형의 중요한 인자로서 평가되어 왔음

다. 절충안

▣ 유형분류표(예시)

01.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0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2) 내용

-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분류
- 폭처법, 특경법상 공갈은 이득액 기준 유형에 포섭
- 특경법상 공갈 유형과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해 일반공갈 유형에 단서 부기안(※ 표시 부분)를 두어 권고형량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3) 검토

- 공갈범죄는 재산범죄와 자유침해범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폭처법과 특경법의 특별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유일한 범죄이므로, 이와 같은 공갈죄의 이중적 속성을 유형분류에 그대로 투영할 필요가 있음
- 일반공갈(공동공갈 포함)과 폭처법 및 특경법의 공갈 사이에는 법정형에 현

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단순한 양형인자의 배치나 권고형의 하한·상한의 상향만으로는 적절한 형량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별도 유형화할 필요

- 특정법상 공갈과 일반공갈 사이에는 이득액 기준에 의한 선고형의 경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상습·누범·특수공갈은 이득액에 의한 선고형의 경중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아니함
- 따라서 일반공갈과 특정법상 공갈에 대해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 분류 하되, 상습·누범·특수공갈은 이득액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별도 유형으로 분류

2. 검토안 - 절충안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일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6월	6월 - 1년	10월 - 2년 6월
2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
3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2월 - 4년	3년 - 7년
4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7년	5년 - 9년
5	50억 원 이상	3년 - 7년	5년 - 9년	7년 - 11년

02.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2	상습특수공갈·누범특수공갈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에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일반공갈의 4유형 또는 5유형에 해당할 경우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와 일반공갈의 해당 유형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형량범위에 의한다.

나. 검토

- 재산범죄로서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고, 자유침해범죄로서는 행위의 성격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으로, 재산범죄와 자유침해범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그에 따라 폭처법과 특정법의 특별가중구성요건이 적용되는 유일한 범죄인 공갈범죄의 이중적 속성을 적절하게 반영함

-
- 이득액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기죄의 소유형 분류방안을 따르되, 공갈죄는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상당하고, 통계상 이득액 3,000만원 미만의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77.4%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1억원 미만에 3,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소유형을 따로 분류함
 - 공갈범죄의 불법의 정도가 이득액(또는 피해액)과 상당한 관련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득액이 올라갈수록 물리적인 폭행, 협박의 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이득액이 수억원대로 올라가는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수 나타나는 반면,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은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이와 같이 상습·누범·특수공갈범죄와 이득액과의 정합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을 이득액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이득액을 기준으로 분류한 일반공갈범죄에 부기안을 마련함이 타당함
 - 특경법상 공갈 유형과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해 일반공갈 유형에 단서 부기안(※ 표시 부분)를 두어 권고형량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
 - 특경법과 폭처법이 경합하는 경우를 상정해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및 50억원 이상의 소유형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가능함. 그러나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은 여태까지 1건만 찾아볼 수 있었고(서울중앙지법 2010고합56), 앞으로도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빈발하리라고 보기는 곤란함
 - 과거 사례가 없거나 장차 발생할 개연성도 거의 없는 범죄 유형에 대해 추상적으로 권고형량범위를 나누어 소유형을 분류한 적은 없었음(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해 사례가 없었던 국외침해를 소유형으로 분류했던 것은 장차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고, 처벌의지에 대한 규범적 고찰을 한 결과였지만, 상습·누범·특수공갈 범죄에 이와 같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특경법상 공갈 유형과 폭처법상 상습·누범·특수공갈 유형이 경합하
-

는 경우 그 처리를 위해 별도 권고형량범위를 설정하기보다는, 기존에 사례가 존재하였던 권고형량범위에 포섭되도록 단서를 마련하는 것이 과거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도 타당함(선거범죄에서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여론조사결과 왜곡 논평·보도 금지 등 위반죄의 경우 참조)

V. 양형인자표

1. 양형인자

▣ 일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갈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인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일반공갈 양형인자 검토

가. 특별감경요소

1)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폭력범죄 - 경미한 상해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사기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횡령·배임 - 임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강도 - 경미한 액수, 경미한 폭행·협박 (일반감경요소, 경미한 폭행·협박을 “폭행·협박의 정도가 공갈죄의 그것보다는 중하나 통상의 강도 사례보다는 경미한 경우” 라고 정의)

▣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 피해가 경미한 경우(다만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는 제외)
 -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강도, 폭력뿐만 아니라 사기, 횡령·배임 범죄에도 구성요건별 행위 유형이 경미하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삼고 있음
- 판결분석결과에 의하면 다수 판결에서 피해가 경미한 경우가 감경요소로 나타남. 하지만 피해가 경미해도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거나, 학생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갈은 피해가 경미하다는 사유만으로 형을 감경하지는 아니함
- 갈취에 성공했다고 해도 “고소하려면 해봐라”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외포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을 감경함

2)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강도, 폭력범죄

■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일반적으로 재산범죄에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을 특별감경요소로 배치하고, 강도 및 폭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배치
- 공갈의 경우 사기와 함께 재산범죄로 분류되나, 특별감경요소 배치를 위한 양형인자를 분석해 보면 사기범죄에 상응하는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보다는, 정의 부분과 같은 구체적인 양형인자들이 주로 나타남. 폭행 또는 협박이 구성요건이고, 사기와 달리 폭처법이 적용되는 2인 이상의 공동범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강도 및 폭력범죄의 특별가중요소를 참작하여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배치

3)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에 이른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사기, 폭력범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와 유사

■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폭행·협박에 이른 경우(다만 전문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는 제외)
 - 고소, 고발 등 고지된 해악의 실현이 위법하지는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사기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특별감경요소인데 이 사유를 공갈에 그대로 투영하기는 곤란함. 공갈의 경우 피해자의 불법이나 약점을 이용해 공갈하는 범죄가 다수이고, 이러한 유형이 공갈의 전형이기 때문임(폐수 유출을 빌미로 공갈한 경우, 간통 등의 비위 사실을 빌미로 공갈한 경우 등)
- 따라서 공갈에 특유한 특별감경요소로서 유사한 요소를 추출할 필요가 있는데, 공갈범죄에는 기존 채권 추심을 위해 폭행·협박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형의 감경요소로 보아왔음.
-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가 성립하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해도 조직폭력배 등 전문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해 추심하는 업체를 이용한 경우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 이 양형인자와 관련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제정) 제9조 제1항이 “폭행·협박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및 기타 불안감 조성, 사생활 침해, 반복적 또는 야간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제15조에서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률 위반죄와 공갈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갈범죄 양형인자와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음. 하지만 이 법률 위반죄의 구성요건과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일부 겹치기는 하지만 이 법률 위반죄의 징역형의 법정형 상한이 공갈죄의 1/2에 불과하여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공갈죄로만 기소될 것이어서 경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법정형의 차이로 인해 이 양형인자를 특별감경요소로 삼아도 이 법률 위반죄와 관계가 문제될 여지는 없음

4)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공통된 요소(검토 생략)

5)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자수는 포함, 내부고발에 대한 검토

▣ 유사 범죄 비교

- 사기, 횡령·배임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조직적 사기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정의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 검토

- 사기나 횡령·배임은 내부고발에 의해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함
- 하지만 공갈의 경우 피해자의 위법이나 약점을 이용해서 범행에 이르는 행위가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사기나 횡령·배임과 같이 내부고발에 의해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를 상정하기 곤란함
- 자수만 특별감경요소로 배치하고, 내부고발은 제외하되, 추후 사건 추이에 따라 내부고발을 포섭하는 수정은 가능할 것임

6)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공통된 요소(검토

생략)

7) 기타 논의의 여지가 있는 특별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제외

▣ 유사 범죄 비교

- 사기, 횡령·배임

▣ 정의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검토

- 사기, 횡령·배임에 공통된 양형인자로서, 공갈 역시 재산범죄로서 피해자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면에서 특별감경요소로 고려하자는 의견이 가능
- 그러나 일정한 거래의 외형을 갖추어 손해가 현실화되는 사기, 횡령·배임과 달리, 공갈은 폭행·협박에 의해 재물이 수수되는 유형의 범행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사례에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러한 사례를 상정하기도 어려움
- 이 요소는 공갈에서 제외함이 타당

나. 특별가중요소

1)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폭력범죄

▣ 검토

-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공갈범죄에도 폭력범죄의 이 요소를 특별가중요소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2)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공통된 요소(검토 생략)

3)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사기

▣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조직폭력배로 행세하거나 범죄전력을 고지하는 등으로 행위자의 불량한 성행 또는 경력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성행이나 경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범행에 이른 경우
- 가족의 신변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경우
-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린 경우
- 공무원의 지위 또는 언론사 기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단체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칭해 공갈에 이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공갈범죄는 공갈의 형태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익의 폭도 무척 넓게 포진되어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는 범죄유형임

- 이득액이 적어도 공갈의 정도 즉, 범행수법이 불량하다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 폭력범죄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및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역시 넓게는 이 요소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고, 공갈에서만 흔히 나타나는 범행수법으로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는 등의 행위를 가중요소로 배치함
- 한편 공갈범죄에서는 기자,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상당수 존재하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공갈에 특유하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액도 상당한 편임. 사회의 구조적 비리를 캐내어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자, 국민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 등이 그 활동으로 얻은 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오히려 범행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시정의 필요성도 높은 실정임

4)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사기, 횡령·배임

■ 정의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검토

- 공갈죄는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재산범죄의 속성을 가짐
- 특히 특경법 공갈의 경우 범죄 수익의 은닉은 사기나 횡령·배임에서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 이 사유를 사기, 횡령·배임과 동일하게 특별가중요소로 배치함

5)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유사 범죄 비교

- 폭력, 강도는 특별가중요소
- 사기는 일반가중요소

▣ 정의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검토

- 공갈은 폭행, 협박을 전제하므로, 폭력·강도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가중요소 적용이 가능함
- 범행에 취약한 공갈 피해자의 경우 재산범죄로서의 속성보다는 폭력범죄로서의 속성에 주안이 있다고 보아야 함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특별가중요소로 배치함

다. 일반감경요소

1) 행위 요소: 소극 가담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은 공통된 일반감경요소이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는 재산범죄인 사기, 횡령·배임에 공통된 일반감경요소임
- 공갈 역시 재산범죄로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감경요소로 배치함

2) 행위자 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대부분 공통되는 요소들임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기에만 배치되어 있지만, 공갈 역시 재산범죄로서의 속성상 사기와 같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감경요소를 둘 필요가 있음

라. 일반가중요소

1)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유사 범죄 비교

- 폭력범죄

▣ 검토편

- 폭처법이 적용되는 폭력범죄의 일반가중요소로서 공갈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2) 계획적인 범행

▣ 유사 범죄 비교

- 강도 및 폭력범죄

▣ 정의

- 다음 요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폭처법이 적용되는 폭력범죄의 일반가중요소로서 공갈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함

3)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유사 범죄 비교

- 폭력범죄는 특별가중요소
- 강도, 사기범죄는 일반가중요소

■ 정의 (사기범죄 응용)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공갈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갈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비교 : 폭력, 강도범죄의 정의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검토

- 이 사유가 폭력범죄에는 특별가중요소로 배치되어 있지만, 강도 및 사기범죄에는 일반가중요소로 배치되어 있음
- 공갈은 폭력범죄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 또는 범행 자체를 즐기는 경우가 드문 경우임
- 강도 및 사기범죄의 예에 따라 이 사유를 일반가중요소로 배치하고, 정의는 사기범죄를 참고함

4)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폭처범이 적용되는 폭력범죄의 일반가중요소

3. 상습공갈 · 누범공갈 · 특수공갈 양형인자 검토

▣ 일반공갈과 동일하나, 다음 부분만 차이가 있음

- 일반공갈의 특별감경요소 중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제외
- 일반공갈의 특별가중요소 중 “동종 누범” 제외
- 일반공갈의 일반가중요소 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외

VI. 다수범죄 처리기준

1) 내용 개관

- 뇌물, 횡령·배임 및 사기범죄 등과 같이 금액을 범죄의 유형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는 범죄군에 적용되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인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및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을 참고함

2) 문제의 소재

- 다만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는 뇌물이나 횡령·배임에서는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한 기준이 제시됨
 - “일반사기 범죄와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 공갈범죄는 일반공갈과 상습·누범·특수공갈로 대유형이 분리되어 있어 외견상 사기범죄의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와 같은 동종 및 이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함

3) 검토 - 횡령·배임의 예를 참고, 사기범죄와 달리 규정

- 사기범죄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유형을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분리해서 유형화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이득액을 합산해서 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선이 야기될 수 있음. 이러한 혼선 방지를 위해 동종 및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음
- 하지만 일반공갈과 상습·누범·특수공갈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임. 또한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 모두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을 분류하고 있는 사기범죄와 달리, 공갈범죄는 일반공갈만 이득액을 기준으로 소유형 분류를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갈범죄는 일반공갈과 상습·누범·특수공갈 사이의 경합범 처리방법에 혼선이 있을 수 없어 사기범죄에 나타는 바와 같은 혼선 방지를 위해 동종 및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는 없음
- 공갈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사기범죄보다는 횡령·배임범죄

에 관한 처리기준을 참고함이 타당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생략(횡령·배임 범죄에 관한 처리기준과 동일)

Ⅶ.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미합의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자수 ○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계획적인 범행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구 분	부정적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